

의안번호	2204944
의 퇴 인	천하람 의원
회 답 일	2024. 11. 12.
추 계 번호	24F45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7년 연장,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5년 연장 및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등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이하 'R&D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5년,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7년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건축물을 포함함에 따라 법인세 등은 2025년 1조 2,624억원, 2040년 2조 7,379억원 등 2025년부터 2040년까지 16년간 총 44조 63억원(연평균 2조 7,50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등, 2025~2040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 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안 제10조제1항)	-	-14,088	-14,976	-	-	-	-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시설 적용기한 연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등 (안 제24조제1항)	-12,624	-27,880	-29,274	-30,562	-31,907	-33,215	-34,577
계	-12,624	-41,968	-44,250	-30,562	-31,907	-33,215	-34,577
	2032	2033	2034	...	2040	누적	연평균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 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안 제10조제1항)	-	-	-		-	-29,064	-14,532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시설 적용기한 연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등 (안 제24조제1항)	-19,853	-20,667	-21,514		-27,379	-410,999	-25,687
계	-19,853	-20,667	-21,514		-27,379	-440,063	-27,504

주: 1) 해당 항목의 세수효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감면액의 20%)를 고려한 값임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조제1항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4.12.31. → (개정안) 2026.12.31. -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을 포함 -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현행 반도체 등 7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포함한 8개로 확대	
2	안 제24조제1항 (통합투자세액공제)	-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 2023년 투자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2030년 투자분까지 7년 연장 <2024년 현행 및 개정안의 공제율 변화> - 당기분(%): (일반) 대 1 → 3, 중견 5 → 7, 중소 10 → 12 (신성장·원천기술) 대 3 → 6, 중견 6 → 10, 중소 12 → 18 - 증가분(%): (일반 / 신성장·원천기술) 3 → 10 (국가전략기술) 4 → 10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4.12.31. → (개정안) 2039.12.31.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에 건축물 추가 - 시설범위: (현행) 기계장비 등 → (개정안) 건축물 포함	
3	안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미공제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10년 → (개정안) 25년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10조제1항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 단,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을 포함하는 내용은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어 본 추계에서 제외
2	안 제24조제1항 (통합투자세액공제)	○	
3	안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미공제액의 이월공제 기간 연장의 세수효과는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어 본 추계에서 제외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5년부터 발생
 - 2024년 귀속소득(투자분 등)에 대한 법인세는 2025년에 신고됨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5년부터 발생한다고 가정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
 -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기술별 2023년 기술별·기업규모별 R&D 세액공제 신고실적 및 2024년 세액공제 실적(잠정치)을 활용
 - － 단, 2024년 실적의 경우, 공제액 총액정보만 활용 가능하여 기술별·기업규모별 분포는 2023년과 동일하다고 가정
 - R&D 세액공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향후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 전망¹⁾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가정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한 특례가 종료될 경우, 해당 R&D에 대해서는 일반 R&D에 대한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 공제율 차이를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
-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안에 대한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
 - 현행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가 2024년말까지 적용됨을 감안하여, 2025년 이후부터는 해당 시설투자에 대하여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사이의 공제율 차이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
 - 향후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각각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비투자 증감률 전망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가정
 - － 단, 2034년 이후에는 2033년 증가율 전망치(4.1%)를 따른다고 가정
 -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감면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므로, 추계 시 이를 고려함

1)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NABO 경제전망: 2024~2028」, 2024.10.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건축물을 포함하는 안에 대한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
 - 산업은행의 설비투자계획조사의 2022~2023년 실적 및 2024년 계획을 바탕으로 연평균 전산업의 자산별 비중이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
 - '22~'24년간 연평균 자산별 투자비중(%): (토지) 11.6 (건축물) 44.1, (기계장비 등) 44.3
 - 향후 동 자산별 투자액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비투자 증감률 전망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가정
- 향후 기업에 이익이 충분히 발생하여 확대되는 세액공제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며, 최저한세 적용 등은 고려하지 않음
- 동 추계는 세액공제율 변화에 따른 기업의 행태변화를 고려하지 않음
 - 개정안에 따라 기업의 R&D 및 시설투자가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추계 시 이를 고려하지 않음
- 이외에도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을 추가하는 내용과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미공제액의 이월공제 기간 연장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합리적으로 추계가 불가능하여 본 추계에서 제외함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되는 인공지능의 범위와 해당 분야의 R&D 지출 및 투자액, 전체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미공제액 규모 및 공제시기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추계가 불가능함

3. 상세 추계내역

가.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

(1) 제도 개요 및 실적

- (제도 개요) R&D 세액공제는 기업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기업규모별·기술별로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해서는 일반 R&D(당기분) 대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 신성장·원천기술 R&D: 대기업 20%,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
 - 국가전략기술 R&D: 대기업 30%,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40%
- ※ ‘매출액 대비 R&D 비중 × 3 (한도 10%)’를 한도로 추가공제율 적용

[표 2]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

(단위: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증가분	25	40	50
	당기분	최대 2 ²⁾	8	25
신성장·원천기술		20~30	20~30 ¹⁾	30~40
국가전략기술		30~40	30~40	40~50

주: 1) 코스닥에 상장한 중견기업의 경우, 공제율 25~40% 적용함

2) 일반기업의 당기분 공제율은 ‘수입금액 대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비중 × 1/2’로 계산함

□ (공제실적) 2023년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법인세 실적은 1조 9,763억원으로, 기업규모별·기술별 공제실적은 다음과 같음

- 한편,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소득세를 포함한 실적은 2023년 2조 799억원, 2024년(잠정치) 1조 8,671억원 수준

[표 3] 기술별 통합투자세액공제 실적(법인세): 2023년 신고 기준

(단위: 억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계
일반	4,418	1,476	5,576	11,470
신성장·원천기술	29	10	3	42
국가전략기술	8	10	8,233	8,251
계	4,455	1,496	13,812	19,763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방법

- (향후 공제액 전망치) 2024년 잠정실적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 전망(2024.10.)에 따라 향후 공제액이 변동할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
 - 단, 공제의 발생시점과 징주시점의 시차(1년)를 고려하여 t년의 공제액은 t-1년의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에 따라 변동

[표 4]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액 전망

(단위: 억원, %)

<신성장·원천기술>	2026	2027
중소기업	194	206
중견기업	186	197
대기업	6,530	6,941
계	6,910	7,345
<국가전략기술>	2026	2027
중소기업	24	25
중견기업	7	7
대기업	8,682	9,229
계	8,712	9,261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증감율 전망(t-1)	6.0	6.3

주: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증감율은 공제의 발생시점과 징주시점 간의 시차를 고려하여 1년전 값을 적용

- (세수효과) 앞서 전망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액을 기준으로 일반 R&D 공제율과의 차이를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한 공제율 특례가 종료될 경우, 해당 R&D는 일반 R&D 공제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가정

[표 5]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공제액 변화
(단위: 억원)

		2026	2027
신성장·원천기술 R&D	일반 R&D 공제율 기준 (A)	938	997
	신성장·원천 공제율 기준 (B)	6,910	7,345
	차이 (B-A)	5,971	6,347
국가전략기술 R&D	일반 R&D 공제율 기준 (A)	595	633
	국가전략 공제율 기준 (B)	8,712	9,261
	차이 (B-A)	8,117	8,62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추계결과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말에서 2026년말까지 2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는 2026년 1조 4,088억원, 2027년 1조 4,976억원 등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 2조 9,064억원(연평균 1조 4,53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6]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소득세, 2026~2027년

(단위: 억원)

	2026	2027	누적	연평균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 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안 제10조제1항)	-14,088	-14,976	-29,064	-14,532

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7년 연장,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5년 연장 및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1)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

- (제도 개요)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해 공제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2023년 투자분에 한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 일반투자자는 기업규모별로 당해 사업연도 시설투자의 경우 1~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의 경우 3~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15~25%의 공제율을 적용
 - 현행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7개 분야의 62개 기술 등
- 여기에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하는 투자분에 대해서는 일반 시설투자 및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3%,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4%의 추가공제를 적용
- 한편, 2023년 투자분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여 기술별·기업규모별로 당기분 및 증가분의 공제율을 차등적으로 인상

[표 7] 현행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기업규모별·기술별 공제율

(단위: %)

	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			
	당기분			증가분	당기분			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기술	1	5	10	3	3	7	12	10
신성장·원천기술	3	6	12	3	6	10	18	10
국가전략기술	15	15	25	4	15	15	25	10

주: ()안은 개정안에 따라 2025년 적용되는 공제율

□ (공제실적) 2023년 통합투자세액공제 실적은 2조 799억원, 2024년 실적(잠정치)은 1조 8,671억원 수준

- 2023년 통합투자세액공제 실적은 대부분 법인세(1조 9,763억원)에서 발생하며, 기업규모별·기술별 공제실적은 다음과 같음

[표 8] 기술별 통합투자세액공제 실적(법인세): 2023년 신고 기준

(단위: 억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계
일반	4,418	1,476	5,576	11,470
신성장·원천기술	29	10	3	42
국가전략기술	8	10	8,233	8,251
계	4,455	1,496	13,812	19,763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4년 공제실적(잠정치)은 1조 8,671억원으로 2023년 대비 12.2% 감소한 수준

(2) 추계방법

□ (현행 공제율 기준 공제액 전망치) 2024년 잠정실적을 바탕으로 국회예산 정책처의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2024.10.)을 반영하여 향후 공제액이 변동할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

- 현행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가 2024년말까지 적용됨을 고려하여, 2025년 귀속분부터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하여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율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하여 추정
 - 공제의 발생시점과 징수시점의 시차(1년)를 고려하여 t년의 공제액은 t-1년의 설비투자 증감률에 따라 변동

[표 9] 현행 공제율 기준 기업규모별·기술별 통합투자세액공제 전망

(단위: 억원, %)

<일반>	2025	2026	2027	2028	...	2040
중소기업	5,159	5,458	5,731	5,983		9,719
중견기업	1,723	1,823	1,914	1,999		3,246
대기업	6,511	6,888	7,233	7,551		12,265
계	13,393	14,170	14,879	15,533		25,230
<신성장·원천기술>	2025	2026	2027	2028		2040
중소기업	35	37	38	40		65
중견기업	12	13	13	14		23
대기업	4	4	5	5		8
계	51	54	57	59		96
<국가전략기술>	2025	2026	2027	2028		2040
중소기업	10	5	5	6		9
중견기업	12	5	5	5		9
대기업	10,095	2,136	2,243	2,342		3,803
계	10,117	2,146	2,253	2,353		3,821
설비투자 증감율 전망(t-1)	5.8	5.0	4.4	4.4		4.1

주: 설비투자 증감율은 공제의 발생시점과 징수시점 간의 시차를 고려하여 1년전 값을 적용

□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공제액 변화) 개정안에 따른 기업규모별·기술별 투자세액공제율의 증가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공제액 산출

- 개정안에 따라 연도별·기업규모별·기술별 투자세액공제율은 현행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변동

[표 10] 현행 및 개정안의 연도별·기업규모별·기술별 공제율

(단위: %)

신고연도 기준	현행				개정안							
					2025~2031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국가전략기술 적용기한 연장 적용)				2032~2040 (국가전략기술 적용기한 연장 적용)			
구분	당기분			증가분	당기분			증가분	당기분			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1	5	10	3	3	7	12	10	1	5	10	3
신성장· 원천기술	3	6	12	3	6	10	18	10	3	6	12	3
국가전략 기술	15	15	25	4	15	15	25	10	15	15	25	10

주: 굵은 글씨는 개정안에 따라 현행과 차이가 있는 공제율

- 2025~2031년간 공제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표 11] 개정안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공제액 추정치: 2025~2031년
(단위: 억원, %)

현행	2025	2026	2027	2028	...	2031
일반	13,393	14,170	14,879	15,533		18,294
신성장·원천기술	51	54	57	59		70
국가전략기술	10,117	2,146	2,253	2,353		2,662
현행 계(A)	23,561	16,370	17,188	17,945		20,302
개정안	2025	2026	2027	2028		2031
일반	28,136	29,768	31,256	32,632		36,918
신성장·원천기술	80	85	89	93		106
국가전략기술	11,124	11,769	12,358	12,902		14,596
개정안 계(B)	39,341	41,622	43,703	45,626		51,620

주: 1) 세수효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감면액의 20%)를 고려한 값임

- 2032~2040년간 공제액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적용기한 연장이 적용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액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

[표 12] 개정안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적용기한 연장에 공제액 추정치: 2032~2040년
(단위: 억원, %)

<국가전략기술>	2032	2033	2034	2035	2036	...	2040
현행(A)	2,771	2,884	3,003	3,126	3,254		3,821
개정안(B)	13,819	14,385	14,975	15,589	16,228		19,058

주: 1) 세수효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감면액의 20%)를 고려한 값임

-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산업은행의 설비투자계획조사를 바탕으로 2022~2024년간 연평균 자산별 투자비중을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
 - 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의 2022~2024년간 전산업 기준 연평균 자산별 투자비중은 기계장비 등 44.3%, 건축물 44.1%, 토지 11.6% 순

[표 13] 자산별 투자 실적 및 계획: 전산업 기준, 2022~2024년

(단위: 조원, %)

	2022	2023	2024	'22~'24년 연평균 비중
기계장비, 운수장비 등	102.2 (45.7)	96.7 (44.4)	96.1 (42.7)	44.3
토지	25.6 (11.5)	26.0 (12.0)	25.9 (11.5)	11.6
건축물	95.8 (42.8)	95.1 (43.6)	103.3 (45.8)	44.1
계	223.6	217.8	225.3	-

주: ()안은 전체 투자 대비 비중

자료: 산업은행, 「2023년 설비투자계획조사」, 2024.1.

- 현행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기계장비 등 투자가 인정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설비투자 중 기계장비 등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과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세수효과 추정
 - 2026년(징수기준) 이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공제세액 전망치에 자산별 투자 비중을 반영하여 세수효과 추정

[표 14] 적용기한 연장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를 반영한 세수효과 추정치
(단위: 억원)

<국가전략기술>	2026	2027	2028	2029	...	2040
현행(A)	2,146	2,253	2,353	2,456		3,821
공제율 인상 반영(B)	11,769	12,358	12,902	13,469		19,058
개정안(C=B×88.4/44.3)	21,368	22,436	23,423	24,454		38,045
차이(D=A-C)	-19,221	-20,182	-21,070	-21,998		-34,224

주: 1) 세수효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감면액의 20%)를 고려한 값임
1.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공제율 인상분을 적용한 후 자산별 설비투자 비중 반영

(3) 추계결과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5년, 임시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7년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건축물을 포함함에 따라 법인세 등은 2025년 1조 2,624억원, 2040년 2조 7,379억원 등 2025년부터 2040년까지 16년간 총 41조 999억원(연평균 2조 5,68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5]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치: 법인세 등, 2025~2040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일반	-14,742	-15,598	-16,378	-17,098	-17,851	-18,583	-19,344
신성장·원천기술	-30	-31	-33	-34	-36	-37	-39
국가전략기술	-1,008	-19,221	-20,182	-21,070	-21,998	-22,899	-23,838
계(A)	-15,780	-34,850	-36,593	-38,203	-39,884	-41,519	-43,222
세수효과 (A×[1-0.2] ¹⁾)	-12,624	-27,880	-29,274	-30,562	-31,907	-33,215	-34,577
	2032	2033	2034	...	2040	누적	연평균
국가전략기술(A)	-24,816	-25,833	-26,892		-34,224	-513,749	-32,109
세수효과 (A×[1-0.2] ¹⁾)	-19,853	-20,667	-21,514		-27,379	-410,999	-25,687

주: 1) 세수효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감면액의 20%)를 고려한 값임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박정환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정환	02-6788-4835	jhpark83@assembly.go.kr